

인증업무의 범위(제4조제4호 관련)

인증업무의 범위	인증품목(인증분야)
기 본	부문기호 A로 분류되는 지정품목
기 계	부문기호 B로 분류되는 지정품목
전 기 전 자	부문기호 C로 분류되는 지정품목
금 속	부문기호 D로 분류되는 지정품목
광 산	부문기호 E로 분류되는 지정품목
건 설	부문기호 F로 분류되는 지정품목
일 용 품	부문기호 G로 분류되는 지정품목
식 품	부문기호 H로 분류되는 지정품목
환 경	부문기호 I로 분류되는 지정품목
생 물	부문기호 J로 분류되는 지정품목
섬 유	부문기호 K로 분류되는 지정품목
요 업	부문기호 L로 분류되는 지정품목
화 학	부문기호 M로 분류되는 지정품목
의 료	부문기호 P로 분류되는 지정품목
품 질 경 영	부문기호 Q로 분류되는 지정분야
수 송 기 계	부문기호 R로 분류되는 지정품목
서 비 스	부문기호 S로 분류되는 지정분야
물 류	부문기호 T로 분류되는 지정분야
조 선	부문기호 V로 분류되는 지정품목
항 공 우 주	부문기호 W로 분류되는 지정품목
정 보	부문기호 X로 분류되는 지정품목

주 : 이 표에서 "부문기호"란 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(KS)의 부문기호를 말한다.